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92호 2025. 5. 7. (수)

고시 · 공고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전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 신설 : 연 1회 (5만원)
- 시행일(부칙)
 - 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 수립 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2025. 5. 1. ~ 5. 22.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2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안 제9조제4항)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 신설 : 연 1회 (5만원)
- 시행일(부칙)
 -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 수립 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2025. 5. 1. ~ 5. 22.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2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u>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